

조치명령서

대상 조합 개요	조합 명칭
	대표자
	사업시행구역의 위치
조치 명령 사항	조치명령의 내용
	조치명령의 사유
	조치명령의 이행기한
	그 밖의 사항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유의사항

1. 위 조치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조치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2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조치명령의 이행기한까지 조치명령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의 7일 전까지 시장·군수등에게 이행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